

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8. . .
발 의 자	마주회의원 외 4명

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마주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18. . .

발 의 자 : 마주희 · 안장환 · 이선우 · 이지연
최경동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많은 곳에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임대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여 영농애로 및 농가일손 부족을 해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농업기계 임대기준 변경(안 제8조)
 - 임대기간 : 출고일 · 입고일 제외 → 출고일 · 입고일 합쳐서 1일
 - 입고시간 :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→ 당일 오후 5시까지
-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(안 별표)
 - 장기 임대시 연간 임대료 기준 추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“입고일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하며,”를 “입고일을 합쳐서 1일로 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다음 날 오전 11시”를 “당일 오후 5시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징수기준

○ 농업기계 임대료

농업기계 구입가격	1일 임대료
300만원 미만	10,000원
300만원 이상 ~ 500만원 미만	20,000원
500만원 이상 ~ 700만원 미만	30,000원
7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	40,000원
900만원 이상 ~ 1,100만원 미만	50,000원
1,100만원 이상 ~ 1,300만원 미만	60,000원
1,300만원 이상 ~ 1,500만원 미만	70,000원
1,500만원 이상 ~ 2,000만원 미만	80,000원
2,000만원 이상 ~ 3,000만원 미만	90,000원
3,000만원 이상 ~	100,000원

○ 농업기계 장기임대(1년 단위 또는 내용연수까지 계약)시 연간 임대료

기 종 명	연차별 임대료(단위 : 천원)						
	1	2	3	4	5	6	계
옥수수수확기	8,528	8,528	8,528	7,675	6,908	6,217	46,384
원형결속기	9,052	9,052	9,052	8,147	7,332	6,599	49,234
사일리지호프	1,165	1,165	1,165	1,049	944	850	6,338
계	18,745	18,745	18,745	16,871	15,184	13,666	101,956

※ 내용연수 이후는 기계상태에 따라 불용처리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

○ 농업기계 배달료

구 분	배 달 료	산출기준	비 고
농업기계	20,000원	1회 편도요금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농업기계 임대·배달기준)	제8조(농업기계 임대·배달기준)
① 농업기계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임대기간: 1회 농업기계별 최대 3일. 이 경우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<u>입고일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하며</u> ,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2. ----- -----. ----- <u>입고일을 합쳐서 1일로 하고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입고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입고시간: 사용일 <u>다음 날 오전 11시</u> 까지	2. ----- <u>당일 오후 5시</u> -----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

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(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(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부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,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,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.